건양대학교 학칙 개정(안)

■ 개정 주요 내용

가. 관련근거

- 교육부 대입정책과-2439(2020-06-02)「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알림」

나. 주요내용

- 제11조의 2(부정입학조치) : 부정입학이 확인될 경우 입학 무효처리에 대한 규정 신설
- 제13조의 2(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내용 삭제
- 제13조의 3(입학전형관리위원회)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신설

※ 조직변경에 따른 위원회 삭제 및 신설

■ 신구대조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없음</td><td><u>제11조의 2(부정입학조치) 전형과정, 입학 후에 아래와 같은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처리한다.</u>
<u>1. (전형과정)자기소개서 등 관련서류 위조, 허위작성, 대필이 확인되거나 입학 후 서류 검증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 자</u>
<u>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u>
<u>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u></td></tr>
<tr><td>제13조의 2(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와 입학전형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계획·조정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99. 3. 12)
<s>2.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으로 위원을 구성한다.(신설 2018.3.1.)</s>
<table><tr><td><s>구 분</s></td><td><s>위원장</s></td><td><s>부위원장</s></td><td><s>위 원</s></td></tr><tr><td><s>내 용</s></td><td><s>총장</s></td><td><s>입학부서장</s></td><td><s>학부(과)장</s></td></tr></table>3.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td><td>제13조의 2(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와 입학전형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계획·조정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99. 3. 12)
2.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td></tr>
<tr><td>없음</td><td><u>제13조의 3(입학전형관리위원회) 대학 입시에 대한세부계획 및 각종 심의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u>
<u>1.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으로 위원을 구성한다.</u>
<table><tr><td>구 분</td><td>위원장</td><td>부위원장</td><td>위 원</td></tr><tr><td>내 용</td><td>총장</td><td>입학부서장</td><td>학부(과)장</td></tr></table><u>2.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의 재가를 얻어 집행한다.</u></td></tr>
</table>